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12. 1. 1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 법조문의 소액부징수는 소득발생기간이나 소득분산 및 합계와 관계없이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단위 건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반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을 매건 및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더라도 일괄 지급시점의 소득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

1) 원천징수적용 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 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및 세율인하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상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지급시 당해 수입금액이나 적법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차등세율 규정이 이자소득은 2000년에 20%, 1999년까지는 이자는 22%(98년 10월부터임. 97년까지는 15%, 98. 1. 1~9. 30까지는 20%), 배당소득은 20%로 단일화되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부활되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율이 15%로 적용되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05년부터는 14%로 다시 인하되었다.

일반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유보(98~2000년)되면서 분리과세로 납세의

무 종결되었는데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의 원천징수세율은 15%이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는 20%이었다.

비영업대금이익 등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이나 25%로 원천징수하며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세율 규정 개요

이자소득은 14%, 배당소득도 1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비영업대금은 2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세율은 30%(2001년부터)이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를,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익, 그리고 개인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다단계 누진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 6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6%,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로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이밖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바, 필요경비 공제후의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소득자의 신고로 인한 개인적 이익이 있어 합산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의 경우에 3억원까지는 20%를 징수하고 3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원천징수한다.

본 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비과세 및 낮은 특별세율적용

본 법 이외에도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상의 제반 특별세율 모두를 감안하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비과

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율은 0이며 나중에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각종 조합의 예탁금이자(2012년까지 비과세, 2013년은 5% 이후로 9%), 세금우대종합저축(9%)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은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실명법률 차등과세의 적용과 변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90%(특정채권 발생 이자소득은 15%)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11. 7. 14 개정)

(2)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25% 및 90%

이자소득의 발생원천자금의 성격이나 이자소득의 소득자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다. 4,000만원 이하 일반금융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14%(일반개인간의 사채이자, 개인대여금이자, 비금융기관의 자금관련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며, 4,000만원 초과 일반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된다.

비실명자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은 90%(특정채권 15%)로 아예 높은 세율이므로 종합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종결된다.

① 대부분 금융이자 소득의 14% 적용

대부분 이자소득의 14% 단일과세

소득세법 제129조 규정의 모든 금융이자 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2005년부터 14%로 인하하면서 부부합계가 아니고, 부부 각자를 따로 따로 구분한 각 거주자별로 연 4천만원 초과금액은 일반다단계누진세율로 합산된다.

대부분 금융이자 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된 후 분리과세 종결되는 금융이자 소득은 일반금융기관 이자배당으로 4,000만원 이하 대부분의 금융이자를 말한다. 즉, 일반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기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부터 받는 모든 이자소득과 일반회사채·국공채에 대한 이자소득도 해당된다.

특히 본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일반 법률에 의거 저율분리과세 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거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이외에는 모두 일반금융이자 소득이고 14%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② 비영업대금이익의 25% 적용

비금융기관이자의 25%

비영업대금이란 금융이나 금융관련 업종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 혹은 비사업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일명 사채이자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상의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이므로 개인자격으로 빌려준 대여금 및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일반법인(금융기관 제외)간의 자금대여에 대하여는 자금을 빌려쓴 자가 빌려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소득수취자가 개인인 경우는 본 법 규정에 의거 일반사채, 비영업대금이익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수취자 개인자신은 자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과

세에 합산신고 납부한다.

비금융대금이익·사채이자 등의 범위

비영업대금이익은 금융·증권·보험 및 제반금융 관련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개인의 자금대여이익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채이자 개인의 금전 운용이익 등을 말한다. 은행법이나 금융관련 법률상 금융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가진 법인에게만 허용되므로, 어떤 자연인이건 개인자격의 금융운용 이익은 비영업대금이 된다.

③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방법

장기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 대신에 분리과세 신청하면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이자발생기간에 따라 97. 12. 31 이전 발생분으로서 수입시기가 98. 1. 1 이후에 속하는 것은 15%이며, 98. 1. 1 이후 발생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20%로 원천징수되었으나 98년 10월부터 삭제되고 22% 단일세율이었다.

2001년부터는 30% 분리과세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2000년까지는 장기채권도 20% 단일세율 적용했으나 폐지되고 30% 단일세율만 있음).

2001년부터는 장기채권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납세자 선택으로 30% 분리과세 적용가능

장기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기간이자와 할인액 및 저가구입이익 등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부터 30%로 한다.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지만 어느 특정 시점·연도의 소득으로 실현되어 너무 높은 소득세율(38%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적당한 중간세율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30%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장기채권금융이자의 분리과세적용이유

장기채권이자소득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창출된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원천징수세율 14%보다는 높으나, 소득세 최고 누진세율인 38%보다는 낮은 30%의 중간세율 정도에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였다.

이는 첫째, 장기채권의 이자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지만 일시에 실현되므로 종합과세하는 경우 세율적용상 억울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며,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는 절차상 불편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셋째, 장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 대부분 수익율이 낮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넷째, 일반종합소득세율(6%, 15%, 24%, 35%, 38%)의 상위층에 원천징수세율(30%)이 설정되어 있어 세수면에서 별영향이 없다는 여러 이유로 특별히 규정된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저축의 30% 분리과세적용

장기저축 중 저축의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분리과세세율은 30%로 한다. 10년 미만 계약은 일반세율대로 하며 소득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일반세율대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다.

장기채권의 범위, 장기저축의 범위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여기서 장기란 채권·증권의 최초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공채나 사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도 신탁재산전액이 10년 이상(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인 공채나 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탁재산 일부라도 10년 이하의 공채나 사채에 투자한 금액 일부가 섞여 있으면 장기채권이 안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

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분리과세 신청서의 제출

장기채권이자소득이나 장기저축이자소득 등에 대해 30%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소득자는 이자소득 수입시기(지급받는 날, 이자지급 개시일, 약정상 상환일, 인출일, 환매일 등)까지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이자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소득지급시(수입시기)까지 분리과세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4%로 원천징수된 후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에 합산한다.

이자소득을 여러 차례로 구분하여 받을 때 한번 신청서를 내면 다시 내지 않아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④ 금융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의 관계

이상의 여러 가지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적용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이자소득명칭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포함여부
일반예금, 적금, 채권, 신탁 등	기타의 이자소득	14%	• 2001년부터는 4천만원 초과분만 종합합산
개인사채, 자금굴리기(?)	비영리 대금의 이익	25%	4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
장기채권 (2001년부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분리과세 종결(납세자 선택)
비실명예금 등	비실명이자소득	90%(15%)	합산하지 않음

⑤ 해외이자·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14% 등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을 뺀 후 지급하는데, 외국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원천징수한다. 외국납부세액이 국내세율 적용 세액보다 크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0금액이 나온다고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해외원천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개념의 규정이다.

본 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3) 비실명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한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은 14% 단일세율 적용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한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보증금의 이자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귀속되나 부동산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어도 이자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되어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지명의 확인안된 경우는 35% 세율적용

일반이자소득이나 혹은 일반배당소득인 경우도 지급시기, 지급의제시기까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실지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다단계 누진세율 중에서 3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즉, 금융실명대상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일반자연인이나 법인 등의 납세자 명의자 아닌 금융소득은 35%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의 90% 적용

그러나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로 90%의 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 90%이며, 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실지명의의 개념과 비실명금융에 대한 거주자 간주

실지명의란 금융실명 관련 법령상의 일반자연인 주민등록이름 및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의 경우도 모두 일반 개인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율 35% 혹은 9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이자소득 등의 실지명의 확인방법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의 개념 및 확인방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주민등록표상의 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이다.

관 련 법 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7. 14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1. 7. 14 개정)

4. "실지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4)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25%, 35% 및 90%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시 일반배당에 대하여는 모두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된다. 그러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법령상 실명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35% 원천징수, 금융실명법상 실명등록대상이지만 비실명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90%이다.

14%를 적용하는 배당소득의 유형

모든 상장,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일반배당으로 14% 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장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협동조합 등이 지급하는 배당금,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배당금, 투자신탁의 이익 등도 모두 일반배당이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합산 과세기준액인 4,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종결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14%로 원천징수된 후에도 종합과세합산된다.

실지명의 확인불능 배당의 35% 적용과 조정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혹은 지급시기까지 배당소득 귀속자의 실제 명이가 확인되어야 14%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주식의 직접 소유자가 주식을 양도양수한 후 주주명부 등에

등록하지 않아 실지명의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종합과세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다단계 누진세율 중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실명확인이 안되는 배당소득에 3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향후 누구의 소득인지 실지귀속이 확인된다면 해당 실제 귀속자에게 합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적용된 누진세율이 낮으면 35% 적용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35% 미만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액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3천만원인 자의 배당소득으로 나중에 확인된 경우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소득세금 : 3,000만원 $\Rightarrow 1,200 \times 6\% + 1,800 \times 15\% = 342$ 만원 $\rightarrow 1,742$ 만원
- 배당소득세금 : 4,000만원 $\Rightarrow 4,000 \times 35\%$ (원천징수) = 1,400만원 $\rightarrow 1,742$ 만원
- 소득귀속이 확인된 경우의 총 소득에 대한 세금
 $7,000$ 만원 (= 3,000 + 4,000) \Rightarrow 종합소득세 : $1,200 \times 6\% + 3,400 \times 15\% + 2,400 \times 24\% = 72 + 510 + 576 = 1,158$ 만원
- 원천징수된 총 세금 1,742만원 중 1,158만원을 초과한 584만원이 환급됨.
 [584만원은 배당소득 4,000만원에 대해 35% 원천징수대신 15% 및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 결과의 환급세액임 : $584 = (4,000 \times 35\%) - (1,600 \times 15\%) + (2,400 \times 24\%)$] : 3,000에 대해 1,200까지 6%, 1,800까지 15% 적용된 후 나머지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적용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의 90% 적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자연인은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확인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에 위배하거나 실지명의로가 등록되지 않거나 어떤 연유로든 비실명자산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도록 본 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다. 9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에서 상장법인,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이 실지명의를 등록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인주식의 직접적 소유자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기의

35% 원천징수세율 적용자가 된다.

(5)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전문직이나 자유직업적 사업수입의 3%

전문직업 및 자유직업 등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 지급시 수입금액의 3%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입은 대부분 용역업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원가가 인건비인 경우인데, 소규모가 많아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있다면 과세업무가 완료된다. 따라서 거래쌍방간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상호간에 주고 받지 않더라도 수입 혹은 소득이 집계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의료용역이며, 개인이 직원 등을 고용하지 않고 별다른 물적 시설없이 자기혼자 받는 성과실적급여 등의 자유직업적 사업소득에도 3%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전문면허증사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관세사 등)은 99년부터 부가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이 원칙이며 원천징수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08. 2. 2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6) 봉사료 수입금액은 총액×5%

음식·숙박업소·과세유흥장소에 종사하는 직원이 음식 등 재화·용역 공급대가와 별도 개념으로 받은 팁·봉사료는 음식·숙박업자가 봉사직원에게 지급할 때 총액에 대해 총액×5%의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하

면 5.5%)을 징수하여 납부한다.

(7)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적용하는 공적연금

연금소득에 있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본 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 적용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다른 연금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신고한다.

개인연금·퇴직연금소득×5%

공적연금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으로 받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의 경우에는 지급기관이 5%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8) 근로소득·퇴직소득·퇴직공제반환금의 원천징수세율액

기본세율 적용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시는 본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 적용시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표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에 1년의 소득을 정산한다. 기본세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2. 1. 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상기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상기의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눔으로 세액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 **소득세법 제55조【세 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기본세율 적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직장근무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공제기금원금의 기간이익이나 자금사용 이익인데 따라서 이자소득의 일종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누적액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차원에서 퇴직소득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이익·차익에 대하여는 단단계 누진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근속연수별 공제는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제기금 누적액이 5,000만원, 20년 근속후 받는 총액이 1억 원이면 초과반환금은 5천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1,200 \times 6\% + 3,400 \times 15\% + 400 \times 24\% = 678$ 만원이다.

(9) 일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의 6%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시 일급여액에서 10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일용근로과세소득금액에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 20%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당해 소득수취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상 합산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 금액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득자가 자신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이 적어 20%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기타소득을 합산함으로써 20%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다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합산 신고여부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와 시행령 제93조는 복권당첨소득과 승자투표권의 환급금, 신용카드 사용자의 보상금에 대하여도 20%(복권당첨소득 3억 초과시는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한 기타소득 이외의 제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 3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야 한다.

물론 연 300만원 이하이면 일반기타소득과 이자도 합산할 필요가 없다.

2) 근로소득·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매월분 소득지급시 기본세율 적용대신 간이세액표 적용

매월분의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이 규정하

고 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간이세액표의 별도 규정

여기서 간이세액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다음 시행령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별표 2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 ①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개정)
- ②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2010. 2. 18 개정)

과세편의상의 규정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세율은 1년간의 소득금액을 기준적용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다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표인 간이세액표를 미리 만들어 모든 납세자가 이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는 납세자 중 가장 많은 수이며 매월 지급받는 정형성이 있으므로 매월분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지급시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실무상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체전자계산조직 적용

근로소득·연금소득원천징수 업무를 본 법의 제반 사항이 적법히 반영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면 공표된 간이세액표에 의하지 아니하

고 단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는 과세권자(국가)가 소득지급자 혹은 자금지급자에게 국가가 징수할 세금의 징수권리를 위임하여 주고 납세협력의 무료부과한 것인바, 각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는 지급금액에서 세금을 떼고난 잔액만 지급하며 떼낸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의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적법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원천징수세액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과소납부한 세액의 3%에 미납기간 1일당 0.03%를 곱한 금액(미납액×날자수×하루당 0.03%)을 합하여 미납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원천징수 본 세금자체도 소득지급자가 일단 납부한 후(추징된 후), 소득수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 받거나 아니면 세액부담액 자체를 소득지급으로 보는 총액화(gross-up) 반영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원천징수 과소납부한 세액의 3%와 미납기간 1일당 0.03%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가산

법정 납부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의 미납·과소납·미달납부 등 제반 과소납부행위에 대해 과소납부된 금액의 3%와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미납세액 등의 10%의 한도 내에서 가산세로 하여 과소납부한 본 세액에 가산한다.

결국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의 관계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가산세 개념이 없고 이렇게 징수한 혹은 징수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납부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원천징수될 세액이 과세관청 등에 의거 직접 징수되었어도 원천징수납부행위는 없었으므로 추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한다.

이밖에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총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소득귀속자가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의 고지결정세액을 납부하면 이미 결정고지된 원천세액의 본세는 취소되고 가산세만 징수되면 된다.

원천징수납부 적법이행 여부 판단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적법히 납부하기만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따라서 소득지급시기 및 소득지급시기의제와 관련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즉, 본 법상의 원천징수할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 등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시는 법인세신고기일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교부통지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적법한 징수로 본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받는 자

본 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 본인 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 및 위임받은 자와 대리 및 위임받은 자로 의제되는 자 모두는 납부 및 미달 납부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받는다. 즉, 소득 지급 및 소득대신 지급위임 등 원천징수 관련선상에 있는 모든 자가 의무자이므로 불성실가산세도 자신의 소득지급이 아니라 위임, 대신 지급 관계자라도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위임·대리받은 자 등도 그 원천징수의무관계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자

과세편의 및 국가예산 관계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이다. 국제관계, 면제 및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가산세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과세표준 신고상 미달된 소득금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이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세는 배제된다.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국민연금법,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한다.

4. 원천징수의무이행 관련절차와 방법

1) 원천징수세액납세지

납세지의 개념

납세지란 개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고 제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절차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세권자인 국가 행정조직 등과 행정지역 개념인 장소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동시에 과세권자 측면에서는 소득세부과지가 된다.

납세지는 추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정부의 조사 결정 및 제반 과세절차 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권한범위를 정하는 요소가 되는 지역인바, 납세지는 세액계산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지는 추상적으로 발생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인 조세채권으로 전환하는 권한기관을 정하는 요소인데 납세지는 결국 조세행정 절차상의 규정이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별도규정

소득세법상의 많은 소득은 당해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위임받은 자에게 완납적 혹은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납세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법 제7조는 이러한 소득발생시 소득지급자의 자기 납세지 등을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를 위한 납세지로 특별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주소지 및 거소지(거주자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의 소재지·거류지·체류지(비거주자인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독립채산 사업장소재지(법인인 경우), 유가증권 발행한 외국·내국법인소재지(납세지가 없는 경우) 및 납세조합의 소재지 등을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납세지로 한다.